

##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

㉔마팔하이테크코는 임.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누구든지 안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 1.제보자 신분 누설 및 색출 행위 금지

가. 제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영진단팀은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보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를 금지함.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 누설을 금함.

나.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등에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제보자의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함.

다. 신분 보호 의무위반(인사상/거래상 불이익)시 관련자는 처벌함. (인사위원회에 상정함)

라. 제보를 한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,  
해당 불이익 조치를 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사윤리위원회에 상정함.

#### 불이익 조치 정의

- 파면, 해임,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
- 징계,정직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- 전보,전근, 직무 미 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-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,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-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,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

### 2.제보자 신분노출이 예상되는 경우

가. 제보자 신분 노출(예상)시, 당사자는 인사실에 통보, 인사실은 신분 노출 경로를 조사하여, 관련자를 전사 인사위원회에 상정함.

나. 제보자 본인이 원할 경우, 인사실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인사실은 대표이사 보고 후, 해당 색출 시도 임직원에 대해 즉시 보직변경/이동 발령 등 인사조치 권고를 할 수 있음.